

도로심의관 도로관리과

### 공사구간내기존도로의유지보수책임한계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의 확장·포장, 교량·가설 등 공사구간 내의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유지보수를 철저히 수행토록 함으로서 교량 등 기존 구조물의 안전관리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모든 도로공사구간 내의 기존도로(시 관내 국도 제외)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청장 책임하에 시행하되 현지역건, 공사의 난이도, 공사의 규모 및 업무형편등을 고려하여 지방청장과 국토유지건설사무소의 장(이하 “국도유지소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유지보수 책임) ①공사구간내의 기존도로에 대한 다음의 유지보수는 지방청장 책임하에 시행한다.

- 가.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등 포장도로의 유지보수
- 나. 교량·터널의 개출 및 보수
- 다. 각종 구조물의 일상 및 긴급보수
- 라. 측구, 배수관 및 암거 등 배수시설의 정비
- 마. 낙석·산사태의 토석 제거 및 이에 따른 차량의 통행제한
- 바. 낙석방지책, 방호벽 및 가드레일 등 각종 부대시설장비
- 사. 공사용 가도·가교의 설치 및 원상복구

②공사구간내의 기존도로에 대한 다음의 유지보수는 국도유지소장책임하에 시행한다.

- 가. 시·종점만이 기존도로와 단순히 연결되는 순수 우회도로 신설공사인 경우의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 나. 낙석·산사태 발생지역의 근본적인 항구대책
- 다. 도로표지판정비

③제설작업은 지방청과 국도유지소장이 합동으로 시행한다.

제4조(기존도로의 점검 및 보수) ①지방청장은 공사구간내의 교량 및 터널 등 기존 구조물에 대하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에 규정된 일상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국도유지소장이 작성·관리하고 있는 교량점검대장(사본)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국도유지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도유지소장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에 의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안전상 결함이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관련자료를 붙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점검결과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는 공사구간의 도급자가 우선응급조치하고 지방청장 책임 하에 긴급보수 및 일상보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국도유지소장은 점검결과를 전산화된 교량관리체계(B.M.S)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국도유지소장은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에 대하여도 일반구간과 동일하게 국립건설시험소장에게 포장상태를 조사 보고하여 포장도로관리체계(PMS)에 의한 정기보수(덧씌우기 등)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지방청장은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에 대하여 포장도로관리체계(PMS)에 의한 정기보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국도유지소장은 정기보수 이외에도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가 적정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청장에게 보수를 건의하여야 하며 지방청장은 보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업무의 책임) ①지방청장은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에 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점·사용허가

나. 해빙기 안전대책, 수해 및 설해 등 자연재해의 대비업무

다. 교통통제와 관련된 안내표지 등의 설치

라. 국도유지에서 행하는 통행단속 및 차량통제와 관련한 도급자 인력 지원

②국도유지소장은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에 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통행제한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통행제한하중 결정등) 및 우회도로지정

나. 통행단속 및 차량통제(도급자 인력협조를 포함한다)

제6조(보수기간)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의 보수기간은 공사착수 6개월 후부터 준공 후 국도유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완료할 때까지로 하며 보수기간의 개시 일은 지방청장과 국도유지소장이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공사구간) 공사구간은 계약서상의 공사구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구간)으로서 공사시점부터 종점까지의 기존도로 전체구간을 말한다.

제8조(보수비용) 보수의 책임자가 지방청장인 경우 유지보수비용 및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등에 대한 비용은 공사 도급액에 포함하여 계상한다.

제9조(인수인계서 작성) 지방청장과 국도유지소장은 유지보수 책임구간 인수인계서 국도관리의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지방청장과 국도유지소장이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지침) 종전의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의 유지보수 책임한계」 도관(58710-1005:

‘95.9.23)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현재 발주중이거나 시공중인 국도유지보수사업은 이 지침에 불구하고 기존 시행령이 시행한다.